

2021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

- 일 시 : 2022. 06. 14.
- 장 소 : 교통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2021년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
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

도시기반시설본부
(도시철도국)

2021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에 따라, 2021회계연도 4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 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(예비비의 사용)

예비비 사용사유

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대금(지체상금) 지급 청구』 소송 2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
 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(7차)』와 관련하여 준공 시 공제 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원고측(삼성물산 외 2개사) 귀책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, 2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함.
 - 2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 의무에는 연 12%의 고율이자로, 시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시급한 집행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함.

예비비 사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예산액	증감내역	
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
도시철도토목부	9호선 3단계 919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	배상금 등	532,212	532,212	-

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공사대금(지체상금) 청구소송

공사개요

- 위 치: 송파구 삼전동(구 잠실병원) ~ 8호선 석촌역
- 사업기간: '09.12.31. ~ '18.12.31.(7차 '14.02.05. ~ '15.02.05.)
- 총 연 장: 1.56km(본선 1.23km, 정거장 2개소 0.33km)
- 계약금액: 214,982백만원(7차 39,900백만원)
- 계약업체: 삼성물산(주) 54%, 쌍용건설(주) 40%, 매일종합건설(주) 6%

사건개요

- 사건번호: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18519(공사대금 청구의 소)
(1심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483)
- 당사자: 원고 삼성물산(주) 외 2, 피고 서울특별시 외 1
- 원고소가: 3,990백만원
- 사건개요
 - 『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(7차)』 준공 시 공제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원고측 귀책사유가 없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

지체상금 부과 내역

○ 지체상금 : 3,990백만원

- 39,900백만원(계약금액) × 1/1000(지체상금율) × 100일(부과일수) = 3,990백만원
- 준공일자 : 2015.02.05.(준공검사일 : 2015.12.11.)
- 지체일수 : 309일(부과일수 : 100일)
-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(계약금액의 100분의10)에 달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최대 지체일수는 100일

□ 추진경위

- '09.12.30.: 도급계약 체결
- '09.12.~ '14. 10.: 1차 ~ 6차 공사 시행
- '14.02.05.: 7차 공사 착공
- '15.12.28.: 7차 공사 지체상금 부과 통보
 - 7차공사가 준공기한('15.2.5.) 까지 미완료 되어 지체상금 부과
- '16. 6. 3.: 소장 접수
- '18. 2.14.: 1심 판결선고(서울시 승소 : 100%)

<판결요지>

- 목적물별 준공기한 적용 여부 <원고주장 불인정>
 - 각 차수별로 정한 공사범위 및 기간이 준공기준임
-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판단 <원고주장 불인정>
 - 상수도관 이설협의지연, 지질상태 상이 등은 7차분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하여 공기 지연의 불가피성의 근거가 될 수 없고, 도로함몰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, 서울특별시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.

- '18. 4. 3.: 원고(삼성물산) 항소
- '18. 6. ~ '21.10.: 1차 ~8차 변론
- '21.12.10.: 2심 판결선고(서울시 일부 승소 : 90%)

<판결요지>

- 지체상금액 39억 9,000만원을 그 90%인 35억 9,100만원으로 감액(3억 9,900만원 감)
 - 지질상태는 실제로 굴착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,
 - 감정인(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)의 조사결과 도로함몰은 터널공사 영향이 크지만, 자연공동에 의한 영향도 있어 이를 감안 10% 감액

- '21.12.24.: 판결금 지급(532,211,339원)
- '22.01.01.: 판결 종료 확정

소송결과

- 1심 선고 결과(100% 승소)

소송개요

- 사 건 명 : 공사대금 청구의 소
- 사건번호 : 2016가합532483
- 당 사 자
 - 원고 : 삼성물산(54%), 쌍용건설(40%), 매일종합건설(6%)
 - 주위적 피고 : 서울특별시 / 예비적 피고 : 대한민국
- 청구취지
 - 7차공사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,990백만원 원고들에게 지급 요구

판결요지(1심)

- 목적물별 준공기한 적용 여부
 - 각 차수별로 정한 공사범위 및 기간이 준공기준임 <원고주장 불인용>
-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판단
 - 상수도관 이설협의지연, 지질상태 상이 등 <원고주장 불인용>
 - 7차분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하여 공기지연 불가피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
 - 도로함몰로 인한 공정지연 <원고주장 불인용>
 - 지하철 터널 상선부에서는 다수의 함몰이 발생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하선 부근에서는 함몰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터널 굴진과 함몰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,
 - 도로함몰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, 서울특별시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.
 - 잔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 일수의 합이 지체상금을 부과한 100일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09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체상금 부과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.

○ 2심 선고 결과(90% 승소)

소송개요

- 사 건 명 : 공사대금 청구의 소
- 사건번호 : 2018나2018519(서울고등법원)
- 당 사 자
 - 원고 : 삼성물산(54%), 쌍용건설(40%), 매일종합건설(6%)
 - 주위적 피고 : 서울특별시 / 예비적 피고 : 대한민국
- 청구취지
 - 7차공사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,990백만원 원고들에게 지급 요구

판결요지(2심)

- 지체상금액 39억 9,000만원을 그 90%인 35억 9,100만으로 감액 (3억 9,900만원 감)
 - 광역상수도 이설관련 유관기관 반대에 따른 구조물 설계변경에 대해 원고의 실정보고가 지연된 것은 책임감리의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한 이설가능 방안 등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워 보이고,
 - 지질상태는 실제로 굴착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,
 - 감정인(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)의 조사결과 도로함몰은 터널공사 영향이 크지만, 자연공동에 의한 영향도 있어 이를 감안 10% 감액

판결금 지급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	삼성물산	쌍용건설	매일종합건설	합계
2심	원 금	215,460,000	159,600,000	23,940,000	399,000,000
	이 자(6%) (`16.6.16. ~ `21.12.10.)	70,942,418	52,549,939	7,882,490	131,374,847
	이 자(12%) (`21.12.11. ~ `21.12.24.)	991,706	734,597	110,189	1,836,492
	소 계(A)	287,394,124	212,884,536	31,932,679	532,211,339

※ 지급사유: 원심판결에는 연12%의 고율이자 발생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판결금 지급